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84호 2019. 8. 2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06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고시 ----- 2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721호 2019년도 해양수산사업(2차) 및 2020년 희망물량 신청자 모집 공고 ----- 5
- 삼척시 공고 제737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 9
- 삼척시 공고 제74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3
- 삼척시 공고 제741호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15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 2019 - 106호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 등의 신축(철거) 등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23.

##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 72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15-2, 315-5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 72	20190823		20090626	행정구역명, 시가지우회도로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54 (사직동)		20190823	건물철거	20090626	동지역중심부도로 (기존도로명)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명방리 221-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명방길 311	20190823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고시일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15-2, 315-5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 72	20190823	20190823		20090626	행정구역명, 시가지우회도로활용	도계노인복지관
폐지	2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54 (사직동)		20190823	20190823	건물철거	20090626	동지역중심부도로(기존도로명)	여민자를방범대사과용청년회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명방리 221-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명방길 311	20190823	20190823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계	3 건						

삼척시 공고 제2019 - 721호

### 2019년도 해양수산업(2차) 및 2020년 희망물량 신청 안내 공고

해양수산업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업부훈령 제291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해양수산업지원사업(2차) 및 2020년 희망물량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9일

## 삼척시장

- 1. 공고기간 : 2019. 8. 21. ~ 9. 9.(20일간)
- 2. 접수처 : 2개소(삼척수협, 원덕수협)
- 3. 2019년도 해양수산업 보조사업(2차)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2개 사업	-	240,000		43,000	120,000	72,000	
정치어업	정치망어업 생력화지원	3대	150,000	-	30,000	75,000	4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망 및 정치성구획어업 허가자</li> <li>어선크레인, 피쉬펌프 등 장비설치</li> <li>척당 50백만원 이내</li> <li>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li> </ul>
	정치어망 세척기지원	3대	90,000	-	10,000	45,000	2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망 및 정치성구획어업 허가자</li> <li>정치어망 세척기 설치</li> <li>척당 35백만원 이내</li> <li>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li> </ul>

### 4. 2020년도 해양수산업 보조사업(정치망 생력화, 정치어망 세척기) 희망물량 신청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2개 사업	-						
정치어업	정치망어업 생력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망 및 정치성구획어업 허가자</li> <li>어선크레인, 피쉬펌프 등 장비설치</li> <li>척당 50백만원 이내</li> <li>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li> </ul>
	정치어망 세척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망 및 정치성구획어업 허가자</li> <li>정치어망 세척기 설치</li> <li>척당 35백만원 이내</li> <li>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li> </ul>

### 5. 우선순위

#### ○ 정치어업 지원사업(생력화, 세척기)

- 가. 1순위 : 정치망 및 구획어업 면적이 큰 사업장 (보유한 어장의 합산한 총 면적)
- 나. 2순위 : 해당 정치망 및 구획어업 보유 기간이 오래된 어업자

※ 단, 상기 우선순위로 하되 지원 받은 어장 및 어업면허(허가)를 보유하지 1년 미만인 자는 그 외 순위로 한다. (각 사업별 개별 적용)  
 ※ 보조사업 취소, 지원받은 장비 반납 및 매매한 경우 3년간 사업신청 제외

### 6. 사업신청 제외대상

#### ○ 공동사항

- 가.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수산업개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자 (단, 경고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은 지원 가능)
- 나.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
- 다. 어선법 및 선반안전법 등 수산업개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라.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 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어선
- 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생분해성 어구시험사업 대상자는 위 공동사항중 라, 마, 바 항목만 해당

#### ○ 정치어업 지원사업(생력화, 세척기)

- 가.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을 취소하거나, 지원받은 장비 반납 및 매매한 경우에는 3년간 사업신청 제외
- 나. 정치망, 정치성구획어업자 중 어구세척장비가 없는 어업자 적극권장

### 7. 신청서류 : 붙임 서식 참조

### 8. 기타사항 : 궁금하신 사항은 삼척시 해양수산업과(☎ 570-34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2호 - 정치망어업 생력화 】

# 사 업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19년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

○ 설치 어선현황

사 업 자 주소 및 성명	선명(업종) 톤수(선질)	어선번호	진 수 년월일	어업면허 (허가)번호	최종어선검사		비고
					일 자	종 류	
				-정치망어업 (제00호) -정치성구획 어업(제00호) 구분 표시			

2. 사업계획

○ 크레인 및 피쉬펌프 등 장비 설치 계획

신 청 내 용 (품목, 기종, 규격)	사 업 비 (천원)				예정공기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착공일	준공일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방법)

위와 같이 2019년도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삼척시장 귀하

【 서식 3호 - 정치어망 세척기 】

# 사 업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19년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사업

○ 설치 어선현황

사 업 자 주소 및 성명	선명(업종) 톤수(선질)	어선번호	진 수 년월일	어업면허 (허가)번호	최종어선검사		비고
					일 자	종 류	
				-정치망어업 (제00호) -정치성구획 어업(제00호) 구분 표시			

2. 세척기 설치계획

신 청 내 용 (품목, 기종, 규격)	사 업 비 (천원)				예정공기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착공일	준공일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방법)

위와 같이 2019년도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 공고 제2019-737호

#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 08. 22.

## 삼척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행위 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허가번호	대지위치	허가자	허가목적	허가면적 (㎡)	비고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2016-252	근덕면 매원리 741-48번지 (741-51번지로변경)	김*휘 (인천광역시 계양구)	단독주택(다가구) 신축 및 부지조성	634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2017-104	원덕읍 노곡리 467-4번지외2필지	(주)광*리더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단독(다가구)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638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허가조건 미이행
4. 처분의 근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5. 공시송달의 내용: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2019. 09. 09.(월) 10:00~17:30 삼척시청별관2층재난상황실)
6. 공 고 기 간: 2019. 08. 22. ~ 2019. 09. 08. - 18일간
7. 계 시 장 소: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8. 기 타 사 항: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도시행정부서(033-570-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내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만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	----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신청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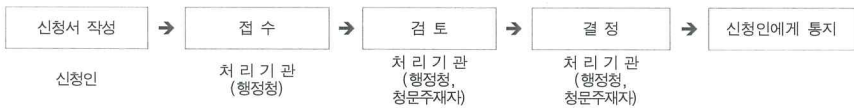
삼척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삼척시청 도시과 도시행정부서 ☎033)570-3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19-74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9.08.22. ~ 2019.09.05.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19.09.06.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대○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414-1 목조/시멘트블럭조 (1층:41.78㎡ 주택, 1층17.02㎡ 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8. 22.

삼 척 시 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19-741호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21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23.

삼척시장

## 제21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
3.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기획감사실)
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5.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공보실)
6.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7.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8.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복지정책과)
9.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10.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11.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과)
12.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소)
13.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수도사업소)
14.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사업소)